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 안에대한수정(안)

의안 번호	관련 211호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6. 2. 20.
제 출 자 : 김영진 위원

1. 수정이유

장학생 선발기준으로 가사형편의 반영이 미비할뿐더러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고려하여 안 제1조 중 학교성적과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를 삭제

2. 주요내용

- 안 제1조 중 “학교성적과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” 를 삭제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
수정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(안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
수정 한다

제1조 “학교 성적과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” 를 삭제 한다.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
수정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역 새마을지도자(새마을부녀회원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자녀 및 유재녀로서 학교성적과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·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(이하 “장학금”이라 한다)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역 새마을지도자(새마을부녀회원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자녀 및 유재녀로서 <u>학교성적과 재능이 우수하</u>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<u>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</u>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(이하 “장학금”이라 한다)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역 새마을지도자(새마을부녀회원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자녀 및 유재녀로서 <u>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</u>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(이하 “장학금”이라 한다)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